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30. 이주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9. 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축조심사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의원)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지적하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적용 분야를 넓히기보다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저출생 극복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국가의 재원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바, 당초 법률 제정시 논의사항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 확대 방안에도 구체적인 검토가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 국가 보상사업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진료과목 또는 분야의 범위 및 우선 순위, 보상의 대상이 될 ‘중대한’ 의료사고의 적용 범위, 적절한 보상 수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